



아동안전보호정책에 관한 사명 선언문, 아동에 대한 약속, 행동강령

우리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상해, 학대, 유기, 방임,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 (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9 조)

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직원¹,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들²은 직무 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음의 사명 선언문과 아동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습니다.

1. 사명 선언문 Mission Statement

-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.
-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관계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.
-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, 보고 및 대응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우리 직원과 관련자들은 아동을 대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의 기준을 각자의 사적 및 업무상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.

2. 아동에 대한 약속 Commitment to Children

- 인식: 우리는 모든 직원, 협력기관 및 기타 관련자가 아동 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며,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우리의 관련자들이 준수할 행동의 기준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다.
- 예방: 우리는 인식 증진 활동과 모범적인 관례를 통해서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것을 보장하며, 직원과 관리자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 학대와 아동 성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.
- 보고: 우리는 직원 및 다른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한다.
- 대응: 우리는 아동이 잠재적으로 학대 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에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,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.

¹ 관련자: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봉사자, 임원, 수탁인

² 협력기관 직원: 협력기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종류이든 아동과의 접촉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기타 개인, 단체 혹은 조직의 직원 및 관련자를 말함

3. 행동강령 Code of Conduct

1.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은 결코:

- 1.1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신체적인 공격 혹은 학대를 가하지 않는다.
- 1.2 현지에서의 성년 연령 또는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접촉 또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, 아동의 나이를 잘 못 알았다는 것으로는 변명이 될 수 없다.
- 1.3 어떤 형태든 아동과 착취나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.
- 1.4 아동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1.5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고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, 그러한 제안 또는 충고를 하지 않는다.
- 1.6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1.7 보호자 없이 밤새 아동/아동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.
- 1.8 아동과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.
- 1.9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하지 않는다.
- 1.10 아동이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학대적인 행동을 묵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.
- 1.11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행하지 않는다.
- 1.12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는다.

2.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은:

- 2.1 위험성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.
- 2.2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하고 조직한다.
- 2.3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.
- 2.4 어떠한 문제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.
- 2.5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 학대 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.
- 2.6 아동에게 직원이나 기타 관련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주고,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.
- 2.7 아동의 역량을 강화한다. - 아동의 권리,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, 문제 발생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.
- 2.8 업무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도록 한다.
- 2.9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, 정직하게 그리고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동들을 대한다.

3.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.

- 3.1 단독으로 아동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
- 3.2 특히 아동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는 것
- 3.3 위법행위로 혐의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것

본인은 상기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사명선언문, 아동에 대한 약속, 행동강령을 숙지하였습니다.

일자: 년 월 일 / 성명: (서명 혹은 날인)



Save the Children

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이수 및 이행 확약서

나는 세이프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(Briefing)을 이수하였으며, 다음과 같이 세이프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- 나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원칙과 목적을 이해하였습니다.
 - 아동안전보호정책 사명선언문
 -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에 대한 약속
 - 행동강령

- 나는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나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거나 아동이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,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신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.

- 나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항상 준수하겠습니다.

- 나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위반한 경우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확약일: 년 월 일
소속 및 직위:
위 본인: (서명 또는 인)

위 본인과 세이프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, 동 내용을 준수하기로 확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확인일: 년 월 일
소속 및 직위:
확인자: (서명 또는 인)